

산업자원부고시 제4-2-2조 제11호 및 제12호

가스보일러 설치시공 및 보험가입 확인서 작성 등

출처/가스안전 · 발행/한국가스안전공사

● 산업자원부고시 제4-2-2조 제11호

제4-2-1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가스보일러를 설치 시공한 자는 규칙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에 가입한 후 그에 설치 · 시공한 시설이 가스보일러의 설치기준에 적합한 때에는 다음의 예와 같이 가스보일러 설치시공 및 보험가입 확인서를 작성하여 5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그 사본(지질: 백상지 260g/m²)을 가스보일러 사용자에게 교부하고 작동요령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기준해설

1) 설치 · 시공확인서를 작성하여 5년간 보존하는 이유

설치 · 시공확인서를 작성하는 이유는 사고발생시 책임소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함이다. 예를 들어, 설치할 때에는 급기구 및 환기구가 적합하게 설치되었으나, 사용자가 사용도중 이를 막아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책임소재는 설치 · 시공확인서를 확인하면 알 수 있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가스보일러를 5년이상 사용하게 되면 아무리 잘 시공하였다 하더라도 고장 및 사고발생의 원인은 보일러 자체의 결함 또는 처음에 설치 · 시공 상의 하자(瑕疵)보다

는 보일러의 노후 및 사용상의 부주의가 원인인 경우가 많다. 따라서, 설치시공확인서는 5년 동안 보호하여야 하는 것이다.

2) 보험가입 확인서를 작성하여 사본을 교부하여야 하는 이유

가스사고 배상책임 보험에 가입한 시공자가 보험가입 확인서를 작성하여 이를 사용자에게 교부함으로써 사용자가 시공자의 보험가입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참고로,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시공자는 도시가스사업법 제4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6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도시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온수보일러와 그 부대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하는 자로 하고 있다.

3) 사용자에게 설치시공 확인서 사본을 교부하여야 하는 이유

시공자로서 책임을 다해 안전시공을 하였음을 사용



자에게 확인시켜 주는 위함이다. 또한 이후에 시공자의 부도(不渡) · 이민(移民) 등으로 시공자를 찾기 어려운 경우에도 동 확인서로 시공자를 쉽게 찾아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4) 사용자에게 작동요령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이유

사용자에게 작동방법 및 안전사용요령 등을 제조사에서 만든 사용설명서에 입각하여 교육시킴으로서 오작동 및 관리미숙으로 인한 가스보일러의 고장과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 참고자료

가스사고배상 책임보험 가입대상(도시가스사업법43조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64조제2항)

〈도시가스사업법 제 43조 제1항〉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가 공급, 사용하는 가스의 사고 또는 가스시설의 시공에 따른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상 손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1. 도시가스사업자

2.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특정 가스사용시설의 사용자

3.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시공자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64조제2항〉

② 법 제43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는 시공자는 도시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온수보일러(온수를 발생시키는 보일러를 말하며,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받아야 하는 검사 대상기기에 해당하는 온수보일러를 제외한다)와 그 부대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하는 자로 한다.

▶ 참고자료

가스시설 시공자의 가스사고배상 책임보험 특별약관

시공자가 보험에 가입한 경우 보험기간 동안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특별약관에서 규정하고 있음.

① 과거에 시공된 보일러에서 사고가 났더라도 당해 시공자가 현업에 종사하여 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계속 보장을 받을 수 있음.

(특별약관 제1조 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 보통약관(이하 「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3조(보상하는 손해)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아래의 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타인의 신체 또는 재물에 대한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1. 아래에 기재된 가스시설(이하 「가스시설」이라 합니다) 시공 작업의 수행 또는 시공작업의 수행을 위하여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시설(이하 「시설」이라 합니다)로 인한 사고

2. 피보험자가 시공한 가스시설이 타인에게 양도된 후, 그 가스시설의 시공하자로 인한 사고

② 다만, 시공자가 휴업 · 폐업등의 사유로 보험계약을 갱신하지 아니한 경우 사고피해자가 보상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을 감안하고 보험증권 만료일로부터 12개월간 연장하여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보험기간의 연장” 내용을 규정함

(특별약관 제4 보험기간의 연장)

회사는 제1조(보상하는 손해)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가스시설 시공업자가 휴업, 폐업등의 사유(보험료미납등 보험계약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보험계약이 해지된 경우를 제외합니다)로 보험계약을 갱신하지 않은 경우 보험기간을 보험증권 만료일로부터 12개월간 연장하여 드립니다.

● 가스보일러 설치 · 시공 확인서 작성 예

| 가스보일러 설치·시공 확인서 | | | |
|--|---------------------|--|-------------------------|
| 사 용 자 | ① 성명 | 총길동 | ② 전화번호 |
| | ③ 주소 | 서울시 강남구 600동 100호 | (전화) 000-0000 |
| | ④ 건물주소제작지 | 상호 | |
| 시 공 자 | ⑤ 명칭 또는 상호 | 000주식회사 | ⑥ 사업자등록번호 |
| | ⑦ 대표자 | 김철수 | ⑧ 전화번호 |
| | ⑨ 사무소주소제작 | 서울시 강남구 600동 100호 | (전화) 000-0000 |
| 건 축 물 | ⑩ 분류 | 단독주택,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기타() | |
| | ⑪ 규모 | 건축면적(00평), 난방면적(00평), (00평형), (00세대), (층수) 2층 | |
| | ⑫ 제조자명 | 00제조업체(주) | ⑬ 제조년도 |
| 보 유 자 | ⑭ 모델명 | 00-100FF | ⑮ 금액 - 배기 방식 |
| | ⑯ 사용가스종류 | 도시가스(doğ연가스) | ⑰ 난방방식 |
| | ⑱ 배기통 재료 | 스테인리스 10m | ⑲ 배기통 높이: 10m 직경: 100mm |
| 시 공 내 역 | ⑳ 보임의뢰처설치장소 | 전용보일러실, 기타(별도) : | |
| | ㉑ 시공년월일 | 2006년 12월 25일 | |
| | ㉒ 급기구, 상부환기구의 역할 여부 | 작동(유호단위별 및 충돌) 및 정상() | |
| 시 공 장 | ㉓ 공동배기구, 배기통의 띠워 이부 | 작동(유호단위별 및 충돌) 및 정상() | |
| | ㉔ 가스줄어들여부 | 작동(유호단위별 및 충돌) 및 정상() | |
| | ㉕ 보임의뢰장장장동 여부 | 작동(유호단위별 및 충돌) 및 정상() | |
| 인 사 항 | ㉖ 배기기사 적정배기 여부 | 작동(유호단위별 및 충돌) 및 정상() | |
| | ㉗ 사용교육의 실시여부 | 교육(설명(유호단위별 및 충돌) 및 정상()) | |
| | ㉘ 기타 특기사항 | 인증발급, 배기통을 사용장(000-000-000) | |
| 가스보일러의 설치기준 제4-2-2조 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확인하고 이를 고부합니다. | | | |
| 2006년 12월 25일 시공자 총길동 | | | |

▶관련 질의회신

시설에 대한 사진 제출에 관한 질의회신

Q 가스보일러를 설치·시공한 자는 설치한 시설에 대한 사진을 도시가스사에 제출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A 도시가스사업법 제14조 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
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공자는 가스사용시설
의 시공기록 및 공사가 완공된 도면(온수보일러·온수기 및
그 부대시설의 경우에는 사공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으
로 할 수 있음)의 사본을 도시가스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함.(2000.11.23 안전공사 시설 610-3971)

가스보일러 사고 시 책임소재에 관한 질의회신

Q 가스보일러의 수명이 다하기 전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도시가스공급자의 책임인지 시공자의 책임인지 여부와 가스보일러를 연결하는 플렉시블호스의 패킹 노후 또는 배기통 이음부의 변형으로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시공자의 책임이 있는지 여부

A 가스사고 발생에 대한 도시가스공급자 또는 시공자
의 책임여부는 사고를 조사하여 규명된 원인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것임(2002. 5.21. 안전공사 시설 610-1412)

Q 가스보일러를 설치한 시공자의 시공에 대한 책임기간(가스사고와 관련(은 몇 년인지.

A 도시가스사업법령에서는 시공에 대한 시공자의 책임 기간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2002.5.6 안전공사 시설 610-12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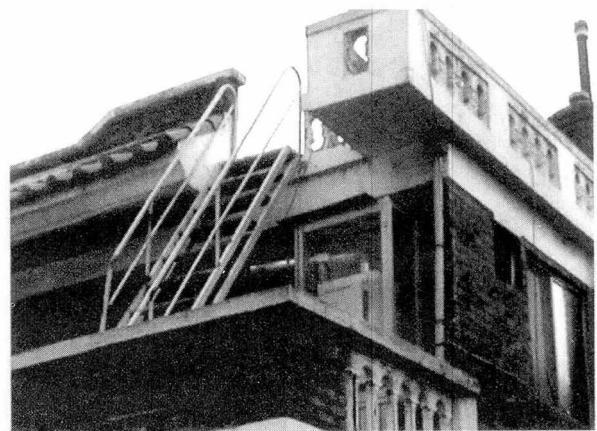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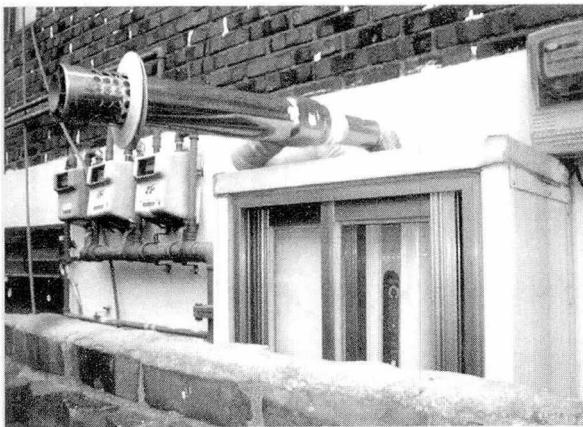
Q 도시가스사업법령에서 시공기록을 5년간 보존하도록 한 것은 5년 후 가스사고발생시 시공기록의 부재로 시공 당시에 하자 여부를 알 수 없는 문제점이 있지는 않은지 여부

A 시공기록의 보존에 대해서는 도시가스사업법령시행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가스사업자가 완공도면의 사본을 영구히 보존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가스사고 발생 시 시공기록의 부재로 시공 당시에 하자 여부를 알 수 없는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판단됨.(2002.5.6 안전공사시설 610-1223)

○ 산업자원부고시 제4-2-2조 제12호

가스보일러를 옥외에 설치할 때는 눈·비·바람 등에 의하여 연소에 지장이 없도록 보호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다만 옥외형보일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옥외형보일러가 아닌 가스보일러를 옥외에 설치한 예]



▶ 기준해설

1) 옥외설치시 보호조치를 강구하는 이유

옥외형보일러가 아닌 가스보일러를 보호조치 없이 옥외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눈·비로 인한 습기로 부식이 발생하여 고장의 우려가 있으며, 바람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연소가 어려우므로 제 기능을 발휘할 수가 없다. 또한, 기온이 낮을 경우 동파의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2) 보호조치 강구 방법

눈·비·바람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샤시나 스테인리스판 등으로 가스보일러를 보호조치한 후에 설치하면 된다. 또한, 동파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水)배관부에는 보온재로 보온조치를 하여야 한다.

▶ 참고자료

옥외(屋外)형 보일러(일본, JIA에서 벌간한 가스기기설치기준 및 실무지침)

동절기 옥외의 낮은 온도에서도 성능을 유지할 수 있으며, 빗물 및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제작된 보일러이다. 즉, 실

외의 나쁜 기상조건에서도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보일러로 외부의 습기에도 일정한 수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습기제어기능이 있으며, 가스보일러 내부 몸체에 장착되어 있는 순환모터, 각종센서, 순환수등이 동결되지 않도록 하는 기능이 추가된 보일러이다.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옥외형 보일러가 생산되지 않고 있다.

▶ 옥외형보일러의 장점

- ① 급·배기가 모두 옥외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실내공기 오염의 염려가 없다.
- ② 배기통 등의 설비가 불필요하다.
- ③ 설치공간이 자유롭다.

[옥외형 보일러설치 예]

